

“내가 지킨 정보보안 신뢰받는 서울메트로!”



서울메트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내용 알림

1.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-1433호('17. 1.19.)와 관련입니다.
2. 2017년 1월 5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, **기간제업무직 채용시 등에 참고**하시기 바랍니다.
 - 장애인, 고령자, 청년 등 고용비율 준수
 - 응시원서,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신체적 조건(사진포함) 및 출신지역,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기재 금지

※ 참고 <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>

제5조(차별행위 금지 등)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균등한 고용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5.>

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, 고령자,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·키·체중 등의 신체적조건(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), 출신지역,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붙임 : 서울시 공문 1부. 끝.

서울메트로사장

수신자 가1,가7,가37,가2-6,가8-36,가38-40,나1,다1,라1-2,마1-12,마13,바1-5,바6-13,사1-11

선임 안현준 부장 한상찬 인사처장 전결 02/10 심재창

협조자

시행 인사처-1193(2017.02.10.) 접수 ()

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(방배동)

/ www.seoulmetro.co.kr

전화 02)6110-5298 전송 02)6110-5294 / ahj1234@seoulmetro.co.kr

/ 대시민공개